

## ② 개정조문

### 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면제한다.</p> <p>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대해서는 <u>취득세</u>를,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증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각각 면제한다.</p>	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취득세</u>를 <u>2028년 12월 31일까지</u> 면제한다.</p>

#### 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